제07-02호

중·파키스탄 FTA 체결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여지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soy@kiep.go.kr, Tel; 3460-1098)

주요 내용

- 2006년 11월 24일 중국은 파키스탄과 자유무역역협정(FTA)을 체결함.
- 이 협정은 홍콩과 마카오와 체결한 CEPA를 제외하고, 중·ASEAN, 중·칠레 FTA에 이어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세 번째 FTA 협정임.
- 중국이 파키스탄과 FTA 협정을 체결한 경제적 동기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육성, 에너지 협력의 강화 및 중국의 서부 개발 촉진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FTA 체결과 동시에 중국은 첫 번째 대외경제무역협력구(對外經濟貿易合作區)를 파키스탄에서 공식 설립하였는데, 이 협력구 사업은 선진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한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사업 중 하나임.
-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어서 중국은 원자력, 수력, 화력 발전 및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로 등 다방면에 걸친 에너지 분야에서 파키스탄과의 FTA를 통하여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한편 중국이 파키스탄과 FTA 협정을 체결한 전략적 동기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리더십 강화와 對美 견제 및 차별화임.
- 중·파키스탄 FTA의 상품협상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참고할 만한 관세인하 모델 (modality)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투자보장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향후 한·중 FTA 협상시에도 활용 가능한 선례를 제공해주고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서로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파키스탄 대통령 의 참석하에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 부장과 후마윤 아크타르(Humayun Akhtar) 파 키스탄 상공부 장관은 2006년 11월 24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중국·파키스탄 FTA를 체결함
- 이 협정은 홍콩과 마카오와 체결한 CEPA를 제외하고, 중·ASEAN, 중·칠레 FTA에 이어 중 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세 번째 FTA 협정임.1).
- 2007년 한·중 FTA를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중국이 가장 최근 체결 한 중·파키스탄 FTA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봄으로써 한·중 FTA를 준비하기 위한 유의미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중·파키스탄 FTA 체결 경위

- 중·파키스탄 FTA 논의는 2004년 12월 파키스탄 수상의 방중(訪中)시 중·파키스탄 특혜무 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을 체결하는 동시에 양국이 FTA 공동연구 그 룹을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파키스탄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공식적 으로 인정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음.
- 중·파키스탄 PTA는 중국이 외국 정부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중국이 지역경제협력에 참여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2)
- 2005년 2월 중·파키스타 FTA 공동연구그룹은 파키스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조기자유화프로 그램(Early Harvest Program: EHP)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4월에 EHP 협정을 체결한 후 동년 8월 6일 영관세 적용 품목 리스트를 발표하게 되었음.
- 중·파키스타 FTA는 기체결 PTA가 조기자유화프로그램의 부분을 이루게 됨으로써 PTA 협 정의 내용이 FTA 협상의 틀 안으로 흡수되는 형식을 취하였음.

¹⁾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FTA談判深入:中國着眼服務貿易、投資自由化」.(2006. 11. 27)

²⁾ 賓建成(2005),「陳柳欽, 世界双邊FTA的發展趨勢与我國的對策探討」,『經濟學研究』, No. 11. (November)

- 중국과 파키스탄 양국은 시장진입, 원산지 규정, 기술적 무역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 (SPS), 무역구제, 투자, 분쟁해결 등의 의제와 관련해 6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2006년 11 월 24일 FTA를 체결하였음.

글상자 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 FTA의 추진단계는 양 당사자간 FTA 추진 의사 확인 후, FTA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 고(1단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전개하여 FTA 협정 최종합의에 도달한 후(2단계), 마지막 으로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는 단계(3단계)로 나눌 수 있음.

중국의 FTA 진행 현황

협상단계	해당국가
1단계	한국, 일본,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2단계	호주, 뉴질랜드, GCC(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3단계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칠레, 파키스탄
기타*	상하이 협력기구(SCO: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공동연구는 하지 않았으나 FTA 추진에 합의한 국가

- 이 중 주요국은 FTA가 이미 체결된 ASEAN 10개국과 칠레. 파키스탄을 비롯하여. 경제무역관계 긴밀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이 체결된 홍콩, 마카오, 현재 FTA 공식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 뉴질랜드, GCC(걸프협력협의회), 그리고 공동연구가 진행 중 인 한국, 인도 등을 들 수 있음.
- 중-ASEAN FTA 《상품무역 협정》이 2005년 7월부터 발효되어 7000여 가지 상품에 대해 전면 적인 관세 인하 조치가 이루어졌고, 다음 조치로서 2007년 1월 14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아세안 10개국 경제부장은 중-ASEAN FTA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함.
 - 중국은 앞으로 WTO 규정 안에서 건축, 환경, 교통, 스포츠, 비즈니스 등 5개 분야 26개 세부 부문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한편, 아세안은 금융, 통신, 교육, 관 광, 건축,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에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서비스무역협정》은 각기 자국의 법률 심사를 거쳐 2007년 7월 1 일부터 정식 발효됨.
- 또한 아직 공동연구 단계까지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SCO(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과도 자 유무역지대 설립에 합의한 바 있음.3)
-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방 선진국 중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를 인정하는 대신 중국과의 FTA 협상을 먼저 시작하였고, 유럽국가로는 아이슬란드, 아프 리카국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MES를 인정하여 중국과의 FTA 협상에 조기에 착수하게 되었 유.4)

3. 중 · 파키스탄 FTA의 추진동기

- 중국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경제적 동기와 외교안보상의 전략적 측면에서 FTA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음.5)
-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동기로는 △해외 에너지·원자재 확보 △무 역마찰 회피(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對서구 우회수출 등) △MES 승인 유도 △산업경쟁력 제고 △미국의 통상압력에의 대응 △서부대개발 및 동북진흥의 촉진 △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이 있음.
- 외교·안보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중시하는 요인으로는 △지역 리더십 강화 △대미 견 제와 치별화 등을 들 수 있음.
- 중국이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한 동기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육성 및 에너지 협력 강화. 그리고 중국의 서부 개발 촉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전략적 동기로는 아시 아 지역내에서의 리더십 강화 및 對美 견제와 차별화를 들 수 있음.

가. 경제적 동기

- 첫째로 중국이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한 경제적 측면의 동기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육 성을 들 수 있음.
- 2005년 기준 중국과 파키스탄의 무역총액은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42억 5.600만 달러(파키 스탄측 UN Comtrade 보고 총액은 27억 8,500만 달러)이며, 중국의 對파키스탄 수출액은 34억 2,300만 달러로 파키스탄은 중국의 33대 수출대상국이고, 수입액은 8억 3,200만 달러 로 파키스탄은 중국의 54대 수입대상국임.
- 중국의 對파키스탄 수출의 전체 수출 비중은 0.44%, 수입은 0.17%를 차지하여 양국 무역 총 액과 교역 상품 면에서 양자 간에 아직 개척의 여지가 많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³⁾ SCO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임.

⁴⁾ 뉴질랜드는 2004년 4월, 호주는 2005년 4월에 각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였음.

⁵⁾ 이장규 외(2007),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참고.

표 1. 중국의 對파키스탄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품 HS코드	품목	2005년	증가율	2006년 (1~11월)	증가율
1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612	27.1	712	27.3
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564	72.3	581	10.7
3	54	인조필라멘트	224	54.9	324	68.4
4	98	특수 교역품 및 분류되지않은 상품	200	-15.2	210	8.4
5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25	21.6	128	16.3
6	29	유기화학품	110	29.5	122	22.7
7	72	철강	45	80.9	119	225.6
8	73	철강의 제품	69	40	112	80.6
9	61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93	67.5	107	33.8
10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88	67.9	93	21.1
-1		전체 수출	3,423	38.8	3,770	22.6

자료: KOTIS 중국무역통계

표 2. 중국의 對파키스탄 수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1, . ,
순위	수입품 HS코드	품목	2005년	증가율	2006년 (1~11월)	증가율
1	52	면	581	28.6	649	24.8
2	74	동과 그 제품	84	136.8	119	59.9
3	41	원피와 가죽	51	28.6	57	22.9
4	26	광, 슬렉 및 회	28	26.9	31	18.2
5	29	유기화학품	47	1,020.90	16	-65.1
6	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1	57.3	12	18.6
7	23	식품공업의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3	52.7	10	231.2
8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4	-58.5	5	54.8
9	55	인조스테이플 섬유	4	3.3	4	21.9
10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석회와 시멘트	3	-10.7	3	-10.5
		전체 수입	833	40	924	23

자료: KOTIS 중국무역통계

- FTA 체결 직후인 2006년 11월 26일 중국은 첫 번째 대외경제무역협력구(對外經濟貿易合作 區)6)를 파키스탄에서 공식 설립하였음.

- 기존의 파키스탄 하이얼(海爾) 공업단지를 기반으로 확장한 이 협력구(合作區)는 중국 하이 얼그룹과 파키스탄 루바(RUBA)그룹이 현금 출자 방식으로 합작한 것으로 중국과 파키스탄 이 55:45의 지분 비율로 설립하기로 하였음.
- 협력구의 면적은 1.03㎢ 로 3차에 걸쳐 건설되며, 투자총액 약 2억5000만 달러, 건설기간은 5년이고, 가전제품 중심으로 포지셔닝을 해 부대산업과 마케팅 네트워크를 포함한 브랜드 가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임.
- 중국은 선진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해 개도국들을 개척 해야 할 수출시장으로서 중시하고 있으며, 개도국 시장은 가전제품의 생명주기상 성장기에 있으므로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제품이 개도국의 소득수준 및 소득구조의 특성에 잘 부합하여 관련 기술과 설비, 부품의 수출 증가에도 유리한 것으로 평 가하고 있음7).
- 다음으로 중국이 파키스탄과 FTA를 추진하는 또 다른 경제적 동기는 파키스탄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부단히 확대 되고 있어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에너지 부문 협력이 양국 협력의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고 언급함8)
- 후 주석은 중-파키스탄 쌍방이 파키스탄 차시마(Chashma)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에서 양 호한 협력을 해 온바, 금후에도 이러한 협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며, 수력발전, 화력(석탄) 발전 및 기타 새로운 에너지 등의 여러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또한 중국은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동과 중앙아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석유 및 천 연가스의 파키스탄을 통한 안전한 수송로의 확보하고자 함.
- 홍콩 『대공보(香港大公報)』는 파키스탄이 중국과 협력하여 '에너지 회랑(回廊)'을 건설할 계 획인 것으로 보도함 9)
-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은 2006년 2월 중국 방문기간에 파키스탄이 아라비아해의 과다 르 심수항과 육로를 이용해 중국으로 석유를 운송하는 '에너지 회랑'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⁶⁾ 대만 경제일보(經濟日報)의 2006년 6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향후 해외에 50개 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를 건립할 계획이며 주요 설립 지점은 중국과의 관계가 양호하고 정국 이 안정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위주가 될 것이라고 함. 이를 통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무역마찰을 완화시키고 막대한 보유 외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함.

⁷⁾ 姚戰琪(2005)「開拓市場與對外投資並重 - 貿易摩擦和爭端高發期的中國家電出口增長空間」. 『國際貿易』. 第5期. pp. 11-15.

⁸⁾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 「中巴續在核電建設領域合作」보도 참고. (2006년 11월 24일자)

⁹⁾ 중신사(中新社),「穆沙拉夫欲建巴中"能源走廊" 称无惧外來壓力」보도 참고. (2006년 4월 29일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또한 파키스탄의 아지즈 총리는 2006년 4월 중국 방문시 이란, 파키스탄, 인도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의 외자를 사회간접부문으로 유치하는 대신 중국 서부 지역에 에너지 자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의하였음.
- 만일 이란, 파키스탄, 인도를 잇는 수송로 외에, 파키스탄이 구상하고 있는 대로 아라비아 반도와 투르크만까지 이르는 수송로까지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를 육로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10)
- 한편 파키스탄은 중국 서부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인접국가로서 중국은 중·파키스탄 FTA 체결을 통해 서부 개발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이 거국적으로 추진하는 서부대개발의 서부 내륙지역은 지정학적인 제약 때문에 세계시 장의 중심인 태평양 연해지역과의 무역에 한계가 노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서부지역과 인접한 국가지역과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 ASEAN에 이어 파키스타과 FTA를 추진한 것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자원 확보. 새 로운 시장 육성 뿐만 아니라 서부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임

나. 전략적 동기

- 중국은 긴장관계에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미국이 인도와 밀착하여 핵기술협정11)을 맺은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FTA의 조속한 체결 도 이러한 외교안보적 목적이 우선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음.
- 수교 55주년을 맞은 안정적인 파트너로서 중국은 파키스탄의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며 파키스타의 주요 무기 공급처가 되고 있는 하편. 파키스타은 중국의 민감하 핵심 사안인 인권문제 등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12)

¹⁰⁾ CSF 중국과세계,「이란-파키스탄-인도 가스 수송 프로젝트와 중국 경제간의 득실」참고. (2006년 5월 17일자)

^{11) 2006}년 12월 18일 미국과 인도는 미·인도 핵협력 협정에 서명하였음.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미가입국인 인도에게, 비록 비군사적 목적에 한정하긴 했지만 전력생산용 핵기술과 핵 연료의 판매를 허용하는 핵선물을 부여함으로써 인도와의 결속을 다졌음.

¹²⁾ 로이터(2006), "China signs free trade pact with Pakistan."(11월 24일자)

- 2006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FTA를 체결한 이후, 연이어 12월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파 키스탄 영토 내에서 파키스탄군과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파키스탄이 2001 년부터 미군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에 은거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 알카에다를 소탕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책이라는 분석이 있음.13)
- 중국은 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FTA를 형성하여 EU, FTAA와 함께 세계적인 삼 족정립(三足鼎立)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TA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 는 시각이 있음¹⁴⁾.
- 중국이 주도해온 상하이(上海)협력기구(SCO)¹⁵⁾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6개국이 정식 회원 국이고 이란, 파키스탄, 인도, 몽고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음.
- 향후 중국은 SCO 회원국간의 FTA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심의 SCO 에 파키스탄이 포함된 것은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권 형성을 지 향하고 있음을 시사함.
- 궁극적으로는 SCO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GCC. ASEAN. 동북아 등의 지역을 중국을 중심으 로 한 하나의 거대경제권으로 통합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들 지역의 국가와 개별 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⁶).

3. 중·파키스탄 FTA의 주요내용

가. 중·파키스탄 무역 조기자유화 프로그램(EHP)

- 중·파키스탄 FTA 체결 이전 단계로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EH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파키스탄산 야채, 과일, 석재 및 무염색 코튼, 혼방직물 등 HS 8단위 기준 769개 품 목에 대해, 파키스타은 야채, 과일, 석재, 방직기계 및 유기화학공업품 등 중국산 486개 품 목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하게 됨.

¹³⁾ 동아일보(2006), 「거대 시장에 핵기술 팔고…中 견제하고…美, 인도와 核동맹」.(12월 20일자)

¹⁴⁾ 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 「中國新全球戰略初見端倪」보도 참고. (2006년 6월 22일자)

¹⁵⁾ SCO는 당사국간 국경안전 문제를 의제로 삼아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6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출범하였음. 이후 SCO는 역내 정치·경제·군사·안보적 협력체제로 빠르게 발전하였고, 2005년에는 인도, 파키스탄, 몽골, 이란 등 4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할 정도로 확장되었음.

¹⁶⁾ 徐强(2004), 世界FTAs發展態勢与中國策略分析, 중국 상무부 사이트 참고.(6. 28)

- 상기 상품의 관세는 2년내 3차례에 걸쳐 인하되며 2008년 1월 1일부터 모두 무관세로 조 정됨.
- 또한 EH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은 2006년 1월 1일부터 파키스탄산 1,671 품목(HS8 단 위 기준)에 대해 관세우대 정책을 실시하며, 파키스탄은 중국산 575개 품목(HS6단위 기준) 에 대해 관세 우대를 적용함.
- 중국의 관세 평균 인하폭은 27%에 달하고, 파키스탄은 22%에 달함.¹⁷⁾

나. 상품분야 관세 양허

- FTA 협정에 따르면 중·파키스탄 양국은 두 단계로 나누어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게 됨.18)
- 1단계에서는 협정 효력발생 후 5년 동안 세목 중 약 85%에 달하는 제품에 대해 감세를 적 용하며, 이 중 약 36%의 제품 관세는 3년내에 무관세로 전환됨.
- 중국의 관세인하 품목은 주로 축산물, 수산물, 채소, 광산제품, 섬유제품 등이며, 파키스탄 은 쇠고기, 양고기, 화공제품, 기계, 전자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

범주	트랙	관세품목 개수	HS 8단위에서의 비중(%)
I	관세철폐(3년)	2,681	35.5
II	0~5%(5년)	2,604	34.5
III	관세 양허율 50%까지(5년)	604	8
IV	관세 양허율 20%까지(5년)	529	7
V	양허 없음	1,132	15

표 3. 중국의 1단계 수입관세 양어표

자료: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ex I.

п	1	파키스탄의	1 CJH	ᄉᅁ과ᆌ	ᄗᅜᆟᅧᄋ
ш	4.	파기스단의	ᅵ尸세	우합편제	201H

 범주	트랙	관세품목 개수	HS 8단위에서의 비중(%)
一 日十	트랙	선세품속 개구	ns 6년뒤에시크 미궁(%)
I	관세철폐(3년)	2,423	35.6
II	0~5%(5년)	1,338	19.9
III	관세 양허율 50%까지(5년)	157	2.0
IV	관세 양허율 20%까지(5년)	1,768	26.1
V	양허 없음	1,025	15.0
VI	예외	92	1.4

자료: 표 3과 같음.

¹⁷⁾ 중신사(中新社),「中國巴基斯坦明年啟動降稅計划 惠及三千余商品」(2005. 12. 11)

¹⁸⁾ 파키스탄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중·파키스탄 FTA 협정문 전문 및 관세양허목록 등을 얻을 수 있음. http://www.commerce.gov.pk/PCFTA.asp

- 카테고리 I은 2007년 25%, 2008년 1월 1일까지 50%, 2009년 1월 1일까지 75%, 2010년 1월 1일까지 100% 상품에 대하여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것이며, 카테고리 II는 5년 이내에 관세가 5% 이하로 삭감되고, 카테고리 III은 5년내 관세 양허율 50%, 카테고리 IV는 5년내 관세 양허율 20%에 도달하는 제품군임, 19)
- 2단계는 협정 효력 발생 후 6년째부터 시작하며 양국은 지난 상황을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협상을 거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역상품 중 무관세 제품의 비율을 90% 이상(세목 개수와 무역액 비중 모두를 포함)으로 확대할 것에 합의하였음, ²⁰⁾
- 중국은 기체결 FTA 상품분야의 관세 양허에 있어서 중·ASEAN FTA에서는 농산품 관세철 폐를 위주로 한 EHP를 시행하고, 그 외에는 일반 상품분야와 민감 품목과 초민감 품목을 구분하여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중·칠레 FTA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부터 최장 10년까지의 유예기간을 두고 관세를 인하하고, 일부 품목은 관세인하 철폐에서 제외하였음.
- 중·파키스탄 FTA에서는 5년 기한의 1단계와 기한과 내용 미정의 2단계를 설정하였으며, 1 단계 내에서도 세부적인 관세삭감 유예방식을 만들었는데, 이는 중국의 FTA 협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협정문 작성이 더욱 공교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다. 원산지 규정

- 중·파키스탄 FTA의 원산지 규정은 부가가치기준²¹⁾을 사용하였으며 중·ASEAN FTA에서와 같이 제품의 가격이 양국 내에서 가공된 후 최소 40% 증가할 경우, 해당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됨.
- 중국이 단일 국가와 맺은 최초의 양자 FTA인 중·칠레 FTA 원산지 규정에서는 부가가치기 준과 세번변경기준을 함께 사용하였고, 최소하용(De minimis) 조항과 누적기준(cumulation)을 포함시킨 바 있음.
- 19) 최종 연도에 각각 50%, 2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각 연도 1월 1일에 도달하는 양허율 목 표는 아래 표와 같음.

범주	2006년	2008년 1월 1일	2009년 1월 1일	2010년 1월 1일	2011년 1월 1일	2012년 1월 1일
III	8%	16%	25%	33%	41%	50%
IV	3%	6%	10%	13%	16%	20%

- 20) 신화망, 中國和巴基斯坦簽署自由貿易協定(중국과 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 (2006. 11. 27)
- 21) 원산지 규정에는 HS코드 변환을 기준으로 하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riterion)과 특정 제품의 전체가치 중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에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부가 가치기준(Value-added Criterion)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됨.

- 현재 7차까지 진행된 중·호주 FTA 원산지 규정 협상에서 중국은 부가가치기준을, 호주는 세번변경기준의 사용을 원하고 있어²²⁾ 협상 진전에 난항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기 체결된 중·ASEAN, 중·칠레, 중·파키스탄 FTA와 협상 진행 중인 중·호주 FTA의 원산 지 규정에 비춰볼 때, 중국은 부가가치 기준을 선호하면서, 세번변경기준을 보충하더라도 매우 명료하고 간단한 형태를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라. 투자보장

■ 중·파키스탄 FTA의 투자보장 부분은 투자촉진과 보호(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투자대우(Treatment of Investment), 징수(Expropriation), 대리(Subrogation), 과실송금(Transfers), 투자분쟁해결(Settlement of Disputes)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음.

표 5. WTO 협정과 중국의 주요 FTA간의 규율대상 비교

규율	협정(발효 연도)	한·칠레 FTA('04)	중・ASEAN FTA('05)	중·칠레 FTA('05)	중·파키스탄 FTA('06)	중·호주 FTA(추진)	중·뉴질랜드 FTA(추진)
1.	상품무역 분야	0	0	0	0	0	0
1.	최혜국대우	×	×	×	×	×	X
	내국민대우	0	0	0	0	0	0
	관세철폐	0	0	0	0	0	0
	원산지규정	0	0	0	0	0	0
	관세평가	0	×	×	×	0	0
	통관절차	0	×	0	×	0	0
	기술규정의 상호인정	Δ	×	X	×	0	0
	위생 및 검역조치	0	0	0	0	0	0
	세이프가드조치	0	0	0	0	0	×
	반덤핑 · 상계조치	0	0	0	0	0	×
	특정상품의 규율	×	×	×	×	×	×
2-1.	서비스무역 분야	0	×	×	×	0	0
	특정 서비스의 규율	0	×	×	×	0	0
	자연인의 이동	0	×	×	×	0	0
	투자 분야	0	×	×	0	0	0
	지식재산권 분야	0	×	×	×	0	0
	정부조달 분야	0	×	X	×	0	0
3-3.							
	경쟁정책	0	×	×	×	0	0
	환경	×	×	0	×	×	×

²²⁾ 호주는 미국, 태국 등과의 FTA 체결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였고, 이후 FTA 체결시 동일 한 방식의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기를 원하고 있음.

	노동	×	×	0	×	×	×
	전자상거래	×	×	×	×	0	0
	경제기술협력	×	×	0	×	×	×
4.	조직규범 분야						
	협정운영조직	0	0	0	0	0	0
	분쟁해결제도	0	0	0	0	0	0

주: 기체결 FTA는 협정문 기준으로, 추진 중 국가는 FTA 가능성 공동연구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 지금까지 중국이 FTA 협상에 있어서 상품분야만을 먼저 체결하고, 향후에 점진적으로 서비스 협상과 투자 부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을 취해온 것에 비추어볼 때, FTA 체결 1단계에서 투자 부분을 포함한 중·파키스탄 FTA는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은 해외진출 대상지로서 주로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 내지 저개발국을 선택하고 있는데 파키스탄도 이러한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에 적합한 대상으로서 투자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투자부분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저우추취(走出去)' 전략²³⁾을 실행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도시는 피하고 농촌으로 갈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농촌이란 경제발전수준이 중국보다 낙후된 국가・ 지역을 가리키며 중국이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니는 국가・지역을 의미함.²⁴⁾

4.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이 파키스탄과 FTA 협정을 체결한 주요한 경제적 동기는 안전한 에너지 수송로의 확보임.
- 중국이 주도하는 SCO의 주요 이슈는 에너지 협력으로 파키스탄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양국 협력을 통해 중국은 장기적으로 중동, 인도, 중국을 잇는 에너지 운송라인을 확보하고자 함.
- 중국이 파키스탄과 FTA 협정을 체결한 전략적 동기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리더십 강화와 對美 견제 및 차별화임.

자료: 정인교·노재봉 편저, 「FTA의 주요내용」,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p. 97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²³⁾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정책의 하나로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²⁴⁾ 이장규 외(2006), 『중국의 FTA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

- 좁게는 남아시아 내에서 미국과 인도가 밀착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최종 목표인 자국 중심의 유라시아 FTA를 형성하여 EU. FTAA와 함께 세계적인 삼족정립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중·파키스탄 FTA의 상품협상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참고할만한 관세인하 모델 (modality)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음.
- 중·파키스탄 FTA의 상품관세인하 스케쥴에서 5년 기한의 1단계와 기한 미정의 2단계를 설 정하고 5년 기한의 1단계 내에서도 세부적인 관세삭감 유예방식을 만들었으며, 6년째가 되는 2단계 진입시에 중·파키스탄 양국 관계와 협정 1단계의 진행수준 및 상황에 따라 2단계의 구체적인 품목과 관세인하 기한을 결정하도록 유예한 것은 한·중 FTA 협상시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임.
- 또한 중·파키스탄 FTA에 투자보장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향후 한·중 FTA 협상시에도 중국 측에 투자보장을 협정문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선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